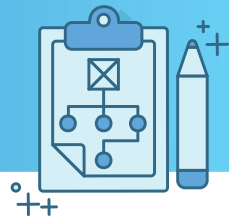


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



-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상시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2020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: '20.01.02~12.31
-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·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·단체 등을 설립하여야 합니다.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-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.



사회적기업 인증·지원제도 관련 상담 안내

전국대표번호: 1800-2012 (해당 권역 지원기관 자동 연결)

권역별 통합지원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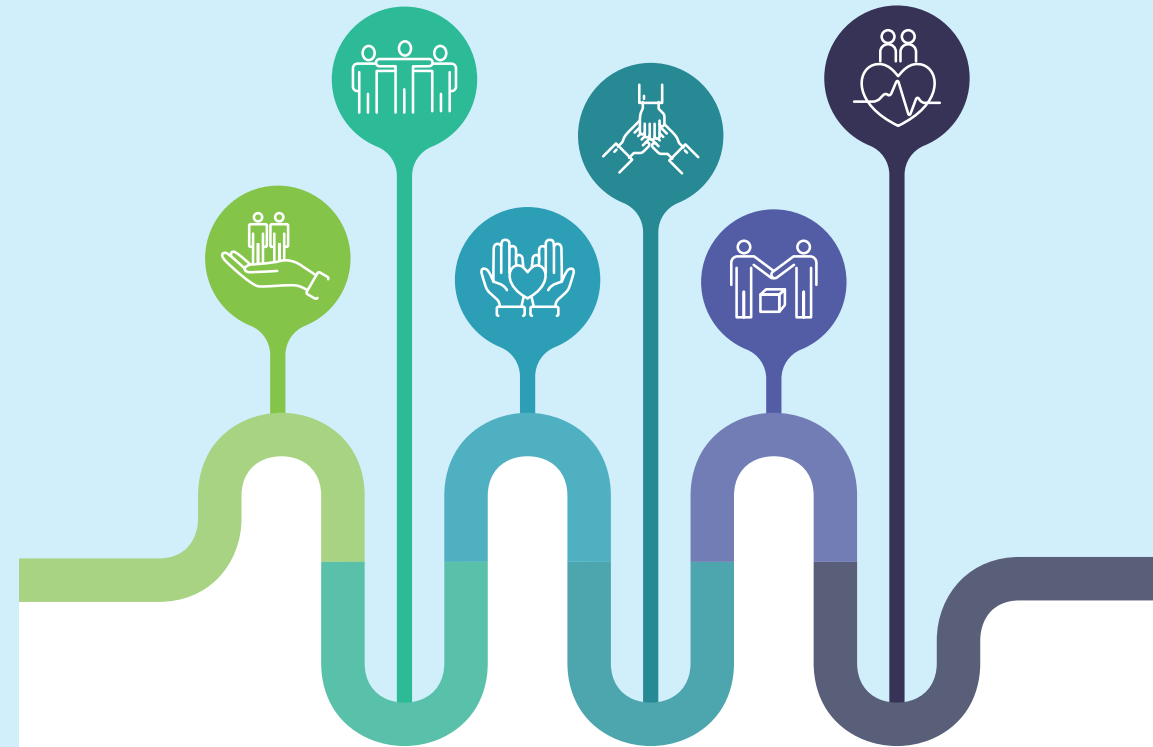
권역	기관명	주소	전화 / 팩스 / 이메일
강원	(사)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,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(우산동)	TEL: 033-749-3940 FAX: 033-749-3900 E-mail: gwcs0524@naver.com
경기	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, 상가동 2층	TEL: 070-4763-0130 FAX: 070-4763-0120 E-mail: pns@pns.or.kr
경남	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	TEL: 055-266-7970 FAX: 0303-0945-7945 E-mail: moducoop@moducoop.com
경북	(사)지역과소셜비즈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,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1호	TEL: 053-956-5002 FAX: 053-267-5003 E-mail: se@sebiz.or.kr
광주	사회적협동조합 살림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(치평동)	TEL: 062-383-1136 FAX: 062-384-1137 E-mail: ses@socialcenter.kr
대구	(사)커뮤니티와경제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, 유창빌딩 5층(동산동 11-4번지)	TEL: 053-956-5001 FAX: 053-217-5003 E-mail: ucsr@hanmail.net
대전	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, 3층(선화동)	TEL: 042-223-9914 FAX: 070-8787-7000 E-mail: c-cmail@hanmail.net
세종		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-5 (마드리드A) 509호	TEL: 044-867-9954 FAX: 070-8787-7000 E-mail: c-cmail@hanmail.net
부산	(사)사회적기업연구원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	TEL: 051-517-0266 FAX: 050-4926-0028 E-mail: info@rise.or.kr
서울	(사)한국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조합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호 (충정로2가, 본관)	TEL: 02-365-0330 FAX: 02-365-0440 E-mail: joyfulunion@naver.com
울산	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	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, 극동방송 10층 (달동)	TEL: 052-267-6176 FAX: 052-267-6177 E-mail: ulsan@sescoop.or.kr
인천	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, 6층	TEL: 032-446-9492 FAX: 032-421-9585 E-mail: inseca@daum.net
전남	(사)상생나무	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,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	TEL: 061-282-9588 FAX: 0303-0955-9571 E-mail: sstreetree@naver.com
전북	(사)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,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	TEL: 063-213-2244 FAX: 063-213-2245 E-mail: jbse2019@gmail.com
제주	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,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	TEL: 064-726-4843 FAX: 064-755-4843 E-mail: jejuden2015@hanmail.net
충남	(사)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	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86번길 27-3,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,4층	TEL: 041-415-2012 FAX: 041-415-2013 E-mail: cnse1212@gmail.com
충북	(사)사람과경제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, 5층(운천동)	TEL: 043-222-9001 FAX: 043-223-9201 E-mail: cbse@hanmail.net



사회적기업

2020년도 사회적기업 안내

SOCIAL ENTERPRISE GUIDE



사회적기업이란



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-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,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

● 사회적기업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

● 예비사회적기업

-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



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

목적	수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적 가치 실현 ·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· 지역사회공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제활동 · 생산 및 영업활동 · 이윤창출 및 재투자

사회적기업 인증요건

구분	사회적기업	예비사회적기업
주관	고용노동부 장관 인증	광역자치단체장, 중앙행정기관장 지정
요건	① 조직형태	① 조직형태
	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	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)
	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·사회 서비스제공 등)	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(취약계층 고용·사회 서비스제공 등)
	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	④ - ⑤ -
	⑥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	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	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	
신청	상시접수	연중 일정 공고

○ 조직형태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-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단법인 • 재단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식회사 • 유한회사 • 합자회사 • 합명회사 • 유한책임회사 • 합자조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익법인 • 비영리민간단체 • 사회복지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사회적)협동조합 • 영농(영어)조합법인 • 농업(어업)회사법인
--	--	---	---

※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

○ 유급근로자 고용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

-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

※ 단,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신청일 직전 6개월(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) 평균 3명 이상 고용
※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,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함

○ 사회적 목적의 실현

-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함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함

사회서비스 제공형	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	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: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% 이상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: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 - 지역의 빈곤·소외·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 -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혼합형	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기타 (청의·혁신)형	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

취약계층이란

- 저소득자
- 성매매피해자
- 북한이탈주민
- 가정폭력 피해자
- 고령자
- 결혼이민자
- 갱생보호 대상자
- 범죄구조피해자
- 장애인
- 1년 이상 장기실업자
- 노숙인
- 여성가장
-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
- 기타(난민, 약물·알콜·도박중독자 등)
- 보호종료아동

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)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

-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, 외국인근로자,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, 학교폭력피해자, 학교박청소년,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

사회서비스란

- 교육
- 사회복지
- 청소년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
- 가사지원
- 보육
- 환경
-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
- 산림 보전 및 관리
- 보건
- 문화예술, 관광 및 운동서비스
- 간병 및 개인서비스
- 기타

○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

※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 (불가피한 경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)

-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일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구조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함

○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% 이상이어야 함

※ 단,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	노무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(=매출액) ※ 단순 지원금, 보조금 해당하지 않음 •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함: 급여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 • 제외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등

- 단, 자본 완전잠식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자료를 통해 판단

○ 정관의 필수사항

-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(10가지)을 반드시 갖춰야 함

- 필수사항: ①목적, ②사업내용, ③명칭, 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⑤기관의 의사결정방식, ⑥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, ⑦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, ⑧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, ⑨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, ⑩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○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

-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

-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

※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일반협동조합 등에 적용
※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금 처분 내용 확인

사회적기업 지원제도

지원제도	지원내용	지원대상	
		예비	인증
전문 인력 채용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■ 지원금은 200만원~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* 자부담률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사회적기업 10%(1차년도) → 20%(2차년도) - 인증사회적기업 20%(1차년도) → 30%(2차년도) → 50%(3차년도) ■ 지원인원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사회적기업 1명 - 인증사회적기업 2명(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) * 고행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■ 지원기간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 	○	○
재정 지원 (예비)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예비)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■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(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) (18년 이전 인·지정 기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사회적기업: 1년차 70%, 2년차 60% - 사회적기업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 * 취약계층 20% 추가지원 (19년 이후 인·지정 기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사회적기업: 1~2년차 각 50% - 사회적기업: 1~3년차 각 40% * 취약계층 20% 추가지원 ■ 지원인원: 최대 50인 ■ 지원기간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 	○	○
사업개발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, R&D,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■ 지원한도: 연간 1억원(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5천만원), 최대 3억원 ■ 자부담: 지원처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* 지원처에 따른 자부담 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회차 10% → 2회차 20% → 3회차 30% 	○	○
사회보험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(4년간) ■ 지원인원: 최대 50인 한도 	-	○
경영지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, 내용,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■ 지원한도: 총 5회(연간 1회)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형 3~10백만원 - 자율형(지속성장형/공동형): 지원금액 제한 없음 *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·분리 ■ 자부담: 신청(계약)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~40% 	○	○
공공기관 우선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*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: 국가기관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843개소(19년) 	-	○
시설비 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용자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 * 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, 희망드림론 협약보증,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	△ (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)	○
세제지원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적기업에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 50% 감면 ■ 취득세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 ■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 감면 ■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	-	○
모태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투자(5개 조합, 290억원 규모) * '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	○	○